

□ 과태료 처분현황(2013년~2017년)

단위:건

구 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
거짓신고	11	7	6	7	4

- (장난신고) 상황근무자가 신고 접수 중 명확한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
- (거짓신고) 신고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하여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
- ⇒ 과태료 처분은 거짓신고에 의한 것임

□ 거짓신고 과태료 처분기준

- 소방기본법 제5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과태료부과기준>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·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	법 제56조제1항	100	150	200

-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(과태료) 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과태료부과기준>

위 반 행 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·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	법 제30조제1항	100	150	200
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·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거짓으로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제1항	200		

□ 장난전화 처분기준

- 경범죄 처벌법 제3조(경범죄의 종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.

- 제40호.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**전화**· 문자메시지· 편지· 전자우편· 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